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검 토 보 고

■ 용혜인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2323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제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	4
가.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4
나. 제정안의 입법배경	6
다. 국회에서의 논의과정	9
라. 관계부처 의견	16
2. 조문별 검토	17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17
나.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19
다. 농어촌기본소득의 신청 및 지급 등(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28
라.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안 제19조 및 제20조)	33
마. 사후관리(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35
바. 보칙(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37
사. 벌칙(안 제30조 및 제31조)	39
아. 부칙	4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용혜인·신정훈의원 등 29인
2. 발의연월일 : 2025. 8. 22.
3. 회부연월일 : 2025. 8.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0.5% 수준에 불과하며, 기후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소득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정부는 다방면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도농 간 소득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보장 정책은 내실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농어촌 지역의 낮고 불안정한 소득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소비 역외유출, 기초생활시설 폐업으로 이어져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핵심 원인임. 농어촌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득보장 정책으로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역내 소비증진을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연 36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의 인구 유입과 역내 소비를 증진해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과 경제적 여건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라. 시·도지사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촌기본소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 마.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지급하고, 수급권자는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해당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안 제13조).
- 바. 농어촌기본소득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간 360만원 이상을 지급하되,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이 결정된 사람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18조).
- 사.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농어촌기본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함(안 제19조).

아.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농어촌기본소득과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

자.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정지 및 수급권의 상실 사유를 규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차. 행정안전부장관이 농어촌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제28조 및 제29조).

카.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읍·면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제정안은 제명을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으로 하여, 본칙 7장 총 31개 조문 및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규정사항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권리와 책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	농어촌기본소득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등
	제8조	위원회의 업무
	제9조	위원의 임기
	제10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2조	농어촌기본소득심의위원회
제3장 농어촌기본소득의 신청 및 지급 등	제13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
	제14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신청
	제15조	정보의 제공
	제16조	조사
	제17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의 결정 등
	제18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조 문		규정사항
제4장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제19조	농어촌기본소득의 특례
	제20조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권의 보호
제5장 사후관리	제21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정지
	제22조	수급권의 상실
	제23조	농어촌기본소득의 환수
	제24조	신고
	제25조	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
제6장 보칙	제26조	이의신청
	제27조	시효
	제28조	농어촌기본소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9조	조사·연구
제7장 벌칙	제30조	벌칙
	제31조	과태료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지급 대상에 관한 특례

제정안은 농어촌주민에게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급 대상, 신청, 지급 결정 등 관련 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안의 입법 배경

기본소득이란 소득이나 자산, 노동시장 참여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¹⁾ 농어촌 기본소득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축수산물 시장의 개방과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라는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농어촌 지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를 유입시켜 도농 간 불균형을 완화하여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안되었음.²⁾

[농가 소득현황]

(단위 : 천 원,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4	증가율
농가소득 ³⁾	23,072	30,503	32,121	37,215	45,029	50,597	119.3
농업소득 ⁴⁾	10,897	11,815	10,098	11,257	11,820	9,576	-12.1
농외소득 ⁵⁾	7,432	9,884	12,946	14,939	16,608	20,147	171.1
이전소득 ⁶⁾	4,743	4,078	5,610	7,906	14,263	18,240	284.6
비경상소득 ⁷⁾	-	4,725	3,467	3,114	2,337	2,634	순증
농업의존도	47	39	31	30	26	19	-59.6
농업소득률	56	45	37	33	33	26	-53.6

※ 자료 : 국가데이터처 「농가경제조사」

1) 최병호·박인화, 「기본소득제 도입의 타당성 고찰」, 한국재정학회, 2020.

2) 제22대국회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6.) 입법공청회

3) 농가소득 = 경상소득(농업소득 + 농외소득 + 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4)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 - 농업경영비’로 농가의 당해연도 농업생산활동의 최종 성과이며 투입된 생산요소에 대한 총보수를 의미함

5) 농외소득은 농업외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성과로서 겸업소득과 사업외 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6) 이전소득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서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7) 비경상소득은 경조수입, 사고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타가구로부터 얻은 수입임

실제로 국가데이터에서 실시하는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4년간 농가 소득은 약 2.2배 증가하였는데 근로수입과 농외소득은 각각 2.7배 및 3.8배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농업소득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이와 같은 농업소득 감소는 젊은 인구의 농업 종사를 기피하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음.

농어촌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로 농어민 수당이 있는데, 이는 농가 소득 감소와 농작 포기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임.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농수산물 등 생산 활동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농어업인 수당과 달리, 농어촌기본소득은 종사하는 직종과 상관 없이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예를 들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의 경우 영농·영어(營漁)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어민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수산물 생산활동에 실제 종사한 자로서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사람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반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경우 직업·소득 등에 제한 없이 시범사업 대상인 연천군 청산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음.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과 농촌기본소득 비교>

구분	농어민 기회소득 ⁸⁾	농촌기본소득
거주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연천군 청산면 (전입신고 1개월 후 신청 및 실거주 확인후 익월부터 지급)
영농활동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u>농수산물 생산활동에 실제 종사</u> - (영농·영어지역) 해당 시·군 기준에 따라 연접된 시·군 가능	-
소득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
지원금액	1인당 5만원/월	1인당 15만원/월
지원방식	시·군 지역화폐 - 지역화폐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80일	
비고	농촌기본소득 지급시 농어민기회소득 등 중복지원 불가	

※ 자료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누리집(farmbincome.gg.go.kr),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서

8) 일반 농어민 기준

다.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

(1) 제22대 국회 이전의 논의 과정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된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제20대 국회에서 윤소하의원이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의안번호 제2022849)」을 발의하며 시작되었으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되었음.

또한 제21대 국회에서는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00018)」 등 6건의 법률안⁹⁾이 발의되어 4건의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3차례 상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의견이 있어 연구용역이나 공청회 등을 거쳐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실제 법 제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음.

<제21대 국회에서의 주요 논의 요지>

쟁점	제정 찬성	제정 반대
공익형 직불제와의 중복	○ 공익형 직불제는 영농 행위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별개의 개념 [법안소위('21.02.23.)]	○ 정책간 관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음 [법안소위('21.02.23.)]

9)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0018호)」,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0167호)」,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1089호)」, 「농어민수당 지원법안(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945호)」, 「농어촌주민 기본수당 지원법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9155호)」, 「농민기본소득 법안(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0954호)」

쟁점	제정 찬성	제정 반대
예산 확보	○ 농어촌 및 농어민 관련 예산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인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사업 추진 필요 [법안소위('21.02.23.)]	○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어려워 사업 추진에 어려움 [법안소위('21.02.23.)]
법 제정 필요성	○ 농업 부문이 정책적으로 소외된 상황에서 농어민의 소득 보장 필요 [법안소위('21.02.23.)] ○ 농업의 특성상 연중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노인 빈곤율이 높아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법안소위('21.02.23.)]	○ 지자체 농민수당에 대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 필요 [법안소위('21.02.23.)] ○ 농어민수당 등은 기본소득적 성격이 강하므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 [법안소위('21.02.23.)]

(2) 제22대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

제22대 국회에서는 농어민 소득안정, 국토의 균형발전, 농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등의 취지에서 농어업인 수당이나 농어촌기본소득 등에 관한 9건의 제정안이 발의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8건) 및 행정안전위원회(1건)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

<제22대 국회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법안 현황>

의안명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일자	특징			소관위원회
		지급 대상	주요 중앙행정기관	금액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의원, 2200431)	2024.6.13	농어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절반 이상월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어민기본소득법안 (이원택의원, 2204959)	2024.10.28	농어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30만원 이상/월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임미애의원, 2206160)	2024.12.3	농어촌주민	농림축산식품부	180만원 이상/년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의의원, 2206788)	2024.12.20	18세 이상 농어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0만원 이상/월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신장식의의원, 2211090)	2025.6.26	40세 미만 청년농어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30만원 이상/월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의원, 2211341)	2025.7.8	농어촌주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40만원 이상/년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의원, 2212912)	2025.9.11	18세 이상 농어촌주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00만원 이상/년	
농어민기본소득법안 (주철현의원, 2213915)	2025.11.5	농어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30만원 이상/월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용혜인·신정훈의원)	2025.8.22	농어촌주민	행정안전부	360만원 이상/년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올해 3월 농어민 기본소득 관련

법률안 5건¹⁰⁾에 대하여 입법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심사과정 등에서 제기된 찬반 의견은 다음과 같음.

주요 찬성 의견으로는, 첫째 농어촌기본소득은 지방소멸 극복과 국토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¹¹⁾

둘째, 농어촌기본소득은 대농 및 기업농 위주의 기존 농업정책을 중소기업 위주의 농업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주춧돌이 되어, 농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청년 귀농·귀촌을 활성화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¹²⁾

셋째, 지방정부에서 농어민수당 및 농어촌기본소득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구 유입 등의 효과가 있었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마련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 재정 투입시 예산 집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예상됨.¹³⁾

반면,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이 제기되었음.

첫째,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자산, 노동시장 참여 등과 상관없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므로 형평성

10) 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의원 대표발의, 2200431),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이원택의원 대표발의, 2204959), 농어촌기본소득법안(임미애의원 대표발의, 2206160),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임호선의의원 대표발의, 2206788),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신장식의의원 대표발의, 2211090)

11) 제22대국회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6.) 입법공청회
제22대 국회 제429회 (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

12) 제22대국회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6.) 입법공청회

13) 제22대국회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6.) 입법공청회

에 반할 가능성이 있음.^{14) 15)}

둘째,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공익직불제 및 지자체 농민수당과의 중복의 소지가 있고 청년농업인 지원이나 농업기술개발 등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음.¹⁶⁾

셋째,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금 대상 및 국고보조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매년 4조 9,010억원(국비 1조 9,604억원, 지방비 2조 9,406억원)¹⁷⁾에서 34조 7,070억원(국비 17조 3,535억원, 지방비 17조 3,535억원)¹⁸⁾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예상되므로 대규모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¹⁹⁾

넷째, 인구유입이라는 정책의 목표와 관련하여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의 사례를 볼 때 일시적인 인구유입의 효과는 있으나 인구감소 추세를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음.²⁰⁾

14) 예를 들어 토마 피케티는 적당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실업자 등 저소득층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이 불평등 해소에 더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음.
(배정원 기자, 피케티 “전국민 기본소득 보장 말고 최저소득 수혜자 넓혀야”, 중앙일보, 2020.6.10., 2025.11.09. 최종확인)

15) 제22대 국회 제429회 (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

16) 제22대국회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6.) 입법공청회
제22대 국회 제429회 (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

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11.

-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대상으로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되, 국비 40% 및 지방비 60% 부담을 가정함.

18) 국회예산정책처,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비용추계서(추계번호 25B4641), 2025.10.30.

- 전국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되, 국비 50% 및 지방비 50% 부담을 가정함.

19) 제22대국회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6.) 입법공청회

20)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을 대상으로 한 농촌기본소득의 경우, 사업 시작 첫해인 2022년에는 연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법안”은 1년 이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연간 360만원 이상의 일정액을 지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를 두도록 한다는 점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회부된 8건의 법률안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의 궁극적 목표가 지역소멸 위기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제명을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정보를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농어촌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행정안전부가 농어촌기본소득의 주무부처를 맡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회부된 8건의 법률안과 차이가 있음.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는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 지방소멸 방지,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함이고,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급방식이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점에서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임.²¹⁾

천군 인구는 감소함에도 청산면의 인구가 오히려 증가하여 인구유입의 효과가 있었으나, 2024년 이후 연천군 인구가 소폭 증가함에도 청산면 인구는 감소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
(이정하 기자, ‘농촌기본소득 시범’ 연천군 청산면 인구 절반 다시 나갔다, 한겨레신문, 2025.02.02., 2025.11.09. 최종확인.)

21) 제22대국회 2025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2025.10.14.)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최근 10월 20일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7개 군을 시범 대상지로 선정하여 발표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인구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미치는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본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예정임.²²⁾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안)>

- 사업 목적 : 국토 관리, 지역사회 유지 등 농어촌 주민의 공익 기여 행위에 대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 사업대상 :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7개 군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 예산 규모 : 국비 예산 1,703억/연, 국고 보조율 10 ~ 4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2)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공동체 사업 등과 연계하여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모니터링과 성과분석을 통해 확산 가능성을 검증하며, 농지나 마을 공용자원을 신재생에너지 활용자원으로 삼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개발이익을 기본소득의 자원으로 환원하는 등 재생에너지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농촌의 순환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라. 관계부처 의견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농어촌 지역 소멸 방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의 도입과 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재 국정과제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26년~'27년)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범사업 성과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 규모, 지역, 대상, 방식 등 세부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정자립도 등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소득 지급을 임의로 규정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26년~'27년) 추진의 성과 평가와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지급 대상, 지급액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식품부의 다양한 정책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 도출이 가능하도록 법률의 주관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해양수산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토대로 대상 지역, 지원 대상, 방식, 금액 등 세부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농어촌 소관부처(해양수산부 및 농림축산식품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2. 조문별 검토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정안은 제명을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으로 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과 경제적 여건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또한 “농어촌”, “주민”, “지역화폐”, “농어촌기본소득”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안 제2조), 국가등의 책무(안 제3조), 권리와 책임(안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과 경제적 여건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4. “농어촌기본소득”이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및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 정 안

5.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6. “수급자”란 제17조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되어 농어촌기본소득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경제·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와 책임) ① 농어촌 주민은 농어촌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 법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주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등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2조) 제정안은 “주민”을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의규정은 법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일반적인 쓰임새와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 등의 뜻을 명확하게 하여 법률 해석과 적용상 혼란,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으로,²³⁾

주민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²⁴⁾’으로 제정안에서 인용하는 「지방자치법」 제16조도 주민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로 규정하는 등 별도의 정의규정을 둘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임.

23)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년 개정증보판)」, 2024.

2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누리집(stdict.korean.go.kr)

참고로, 기존 입법례에서는 ‘남한주민’, ‘북한주민’, ‘농어촌주민’, ‘북한 이탈주민’ 등 법률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민의 대상이 일정한 지리적 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 특정 주민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²⁵⁾

(안 제3조)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는 등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5조) 제정안은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법률이 일반법적인 성격²⁶⁾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함.

25)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남한주민"이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하고, "북한주민"이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6)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년 개정증보판)」, 2024.

나.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정안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기본계획(안 제6조),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안 제7조부터 제11조) 및 농어촌기본소득심의위원회(안 제12조) 등 농어촌기본소득의 추진체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제 정 안
제6조(농어촌기본소득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촌기본소득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농어촌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3.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제도개선 및 관련 법령 정비 4. 그 밖에 농어촌기본소득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등) ①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 정 안

해양수산부장관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
3. 국회가 추천하는 4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국회의 교섭단체 정당이 공동 추천하는 2명, 국회의 비교섭단체 정당이 공동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4.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연대경제단체가 추천하는 4명
5. 그 밖에 농어촌기본소득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2.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
3. 농어촌기본소득 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
4. 농어촌기본소득 정책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농어촌기본소득 우선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련 부처 사이의 협력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어촌기본소득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정 안

②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농어촌기본소득심의위원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촌기본소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6조)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행정안전부가 농어촌기본소득의 주무부처가 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

농어촌기본소득의 부처 소관과 관련하여, 「정부조직법」은 행정안전부의 사무로 ‘낙후지역 등 지원’을 규정²⁷⁾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27) 「정부조직법」

제37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

의 지정이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가 농어촌기본소득을 담당하는 경우 제정안의 취지인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²⁸⁾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농어촌기본소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 수당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기본소득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이라는 지리적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집행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²⁹⁾

생각건대, 농어촌기본소득의 사무분장에 관한 부분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부처 간 사무 분장, 개별 부처의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집행의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2.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3.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4.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29) 참고로, 경기도의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경기도청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제정안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식품부의 다양한 정책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 도출이 가능하도록 법률의 **주관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³⁰⁾

해양수산부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농어촌 소관부처**(해양수산부 및 농림축산식품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안 제7조) 제정안은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제정안에 따른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으로³¹⁾ 동법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고 정책에

30)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멸 위험이 높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신정부 국정과제의 주관부처로서, 농촌개발 사무를 관장하고 보편적 농촌개발 정책을 추진하며 농어촌 특화 소득·복지 정책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재생지원,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안정 업무 주관부처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그 행정기관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³²⁾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재량으로 두고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위원회’가 설치·운영되어³³⁾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 지역개발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고, 현재 정부는 기본사회에 관한 국가비전·기본방향 설정 등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기 위한 (가칭)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 준비 중으므로,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관련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3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2.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

3. 해당 연도 시행계획

3의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5.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정안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은 위원회의 정비·축소 추세를 고려할 때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는 소관부처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사회보장기본법」³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필요하므로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포함될 실익이 적어 위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안 제12조) 제정안은 시·도지사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촌기본소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해당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34)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가지므로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활용을 규정하여 방만한 위원회 운영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³⁵⁾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심의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재량으로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기능 등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유사 위원회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35)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농어촌기본소득의 신청 및 지급 등(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정안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안 제13조), 지급 신청(안 제14조), 지급 결정(안 제17조), 지급(안 제18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3조(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 ①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기본소득 신청 일 이전 1년 이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출생하여 주소지를 해당 농어촌 지역에 둔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제14조(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신청) ① 수급권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하 “농어촌기본소득 신청자”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지급신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농어촌기본소득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신청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보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조사)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농어촌기본소득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토지·건물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

제 정 안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의 결정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결정 내용을 직접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결정 내용을 서면(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으로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의 결정 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농어촌기본소득 지급) ① 농어촌기본소득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간 36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이 결정된 사람에게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22조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다만,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농어촌기본소득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3조) 제정안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자로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민으로 규정하여, 소득이나 자산, 노동시장 참여 등과 무관하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농어촌기본소득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총조사 및 장래인구추계에서 발표된 읍면부 인구 현황과 총인구수를 바탕으로 2026~2030년 5년간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자를 산출한 결과 연평균 지급대상자는 약 964만명임.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산출: 2026~2030년>

(단위: 명)

	2026	2027	2028	2029	2030
총인구(A, 명)	51,609,121	51,534,551	51,459,877	51,384,052	51,305,713
총인구 대비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자 비율(B)	18.7%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자(C=A×B, 명)	9,669,034	9,655,063	9,641,073	9,626,867	9,612,190

주: 최근 5년(2020~2024년)간 총인구 수 대비 읍·면부 인구 수의 평균 비율(18.7%)을 추계기간 동안 변동 없이 적용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및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정과제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므로 시범사업 성과에 대한 국민 공감대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 등 세부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정 자립도 등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소득 지급을 임의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안 제15조 및 제16조)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규정함.

(안 제18조) 제정안은 농어촌기본소득의 금액과 관련하여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간 360만원 이상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여 지급 절차, 금액,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연간 하한 금액인 360만원을 균분지급하고 국비 및 지방비 분담율을 50:50으로 가정한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2030년 5년간 총 173조 5,352억원(연평균 34조 7,070억)으로, 국비와 지방비 각각 총 86조 8,676억원(연평균 17조 3,535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하였음.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수 (A, 천명)	9,669	9,655	9,641	9,627	9,612	-	-
1인당 연간 지급액 (B, 백만원/명)	3.6	3.6	3.6	3.6	3.6	-	-
추가재정소요 (C=A×B, 억원)	348,085	347,582	347,079	346,567	346,039	1,735,352	347,070
국비(D=C×50%)	174,042	173,791	173,539	173,283	173,019	867,676	173,535
지방비(E=C×50%)	174,042	173,791	173,539	173,283	173,019	867,676	173,535

주: 1.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수(읍·면 거주자)는 총 인구의 18.7% 수준으로 가정
 2. 1인당 농어촌기본소득 지급단가는 매년 360만원(월 30만원)으로 가정하며,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3.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50:50으로 가정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및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정과제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므로 시범사업 성과에 대한 국민 공감대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 금액 등 세부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또한 기획재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급액에 대하여 강행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특히 구체적인 지급 수준을 결정하기에 앞서 시범사업 등의 성과 평가, 사회적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의 본사업 추진 계획 구체화 등을 거칠 필요가 있고,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정착지원금, 직불금, 농지 및 주거 지원 사업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급 수준에 대해서는 면밀한 선행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라.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안 제19조 및 제20조)

제정안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특례(안 제19조) 및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권자의 보호(안 제20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9조(농어촌기본소득의 특례) 이 법에 따라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20조(농어촌기본소득 수급권의 보호)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기본소득만이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농어촌기본소득과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9조) 제정안은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의 실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농어촌기본소득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어 수급액이 감소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를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돌의 우려가 있고,³⁶⁾ 기초연금이나 농어민소득 등 다른 이전소득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정안의 조문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농어촌기본소득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선례가 없고 급여의 원칙(보충성), 타 이전소득과의 형평성, 법체계상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³⁷⁾

3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37) 참고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통해 실무적으로 적용 제외 예정임.

마. 사후관리(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정안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 정지(안 제21조), 수급권의 상실(안 제22조), 환수(안 제23조), 신고(안 제24조) 등 사후관리를 규정함.

제 정 안
제21조(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정지)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농어촌기본소득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을 정지한다. 1.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2. 농어촌기본소득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3. 농어촌기본소득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수급권의 상실)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13조에 따른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23조(농어촌기본소득의 환수)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농어촌기본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받은 경우

제 정 안

2. 제21조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농어촌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농어촌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농어촌기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농어촌기본소득(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권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신고) 농어촌기본소득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2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소멸한 경우

2. 제22조 각 호에 따른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안 제21조) 제정안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 정지 사유로 국외 체류 기간, 교정시설 등 수용, 사망 추정 등을 규정함. 이는 「기초연금법」 상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에 관한 규정과 유사한 데,³⁸⁾ 농어촌기본소득의 취지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임.

(안 제22조 및 제23조) 제정안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수급권 상실 사유로 사망과 국적 상실, 국외 이주, 지급 대상요건 미충족 등을 규정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의 환수 사유로 농어촌기본소득의 부정수령이나 지급 정지 기간 중 지급 등을 규정하여,

수급권 상실과 환수 사유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38) 「기초연금법」

제16조(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바. 보칙(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 정 안
제26조(이의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지급 정지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바로잡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조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의신청의 방법·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시효)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권자의 권리와 제23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8조(농어촌기본소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농어촌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조사·연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 제26조) 제정안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기간,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함.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를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³⁹⁾ 제정안은 이의신청의 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정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한다는 점에서 「행정기본법」 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례를 둔.

해당 규정은 이의신청 기간을 늘려 국민의 권리 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에 따라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시정 조치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39)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 벌칙(안 제30조 및 제31조)

제 정 안
제30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안 제30조) 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규정과 유사한 데,⁴⁰⁾ 농어촌기본소득을 부당하게 수급하여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공적 재원을 보호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임.

(안 제31조) 제정안은 안 제16조의 조사 및 안 제24조의 신고 규정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0) 「기초연금법」

제29조(벌칙)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 부칙

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 대상에 관한 특례)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지표를 준용하여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선정한 읍·면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는 읍·면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 해당하는 읍·면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정안은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규정하면서도,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 지표⁴¹⁾를 활용하여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선정한 읍·면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 본문에서 지급 대상을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부칙에서 달리 규정하여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부여된 수급권을 부칙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2026년부터 실시 예정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경우 지급대상 뿐만 아니라 지급액, 지급절차, 위원회의 구성 및 소관부처 등에 관한

4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사항이 제정안의 내용과 차이가 있음.

또한 기존 입법례는 새로운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의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⁴²⁾ 시행일을 놓여준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2028년 1월 1일’로 하고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42) [참고 입법례]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 2005년부터 시범사업 후, 2008년 7월 1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법률 제8403호, 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3장(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2항 중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사항, 제6장(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제8장(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9장(제54조를 제외한다), 제10장(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11장(제58조를 제외한다), 제12장(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범사업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지역의 선정,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교육바우처제도 도입 : 2009년 5월부터 시범사업 후, 9월부터 전국 확대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9165호, 2008. 12. 19.>

제34조의3 (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용권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용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12. 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350